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(양정숙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741

발의연월일: 2020. 7. 9.

발 의 자 : 양정숙 · 김승원 · 김경만

이은주・강득구・윤관석

노웅래 · 한준호 · 임종성

남인순 · 이규민 · 민형배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령은 민사상 변제공탁을 원칙으로 피공탁자의 특정, 공탁통지절차 및 공탁물출급 절차의 정확성 담보 등을 위해 공탁서에 피공탁자의 성명·주소·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형사사건의 경우 민사와 달리 피공탁자가 범죄피해자라는 특성상 피공탁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공탁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. 이에 따라 피고인은 불법적인 수 단을 동원하여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아내고 해당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종용하고 협박하는 등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음.

이에 형사공탁 특례 제도를 도입하여 형사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은 공탁서에 피해자의 인적 사항 대신 사건번호 등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, 공탁관은 법원과 피해자에게 공탁통지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모르는 경우에 도 공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(안 제5조의2 신설).

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5조의2(형사공탁의 특례) ①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등 스스로의 노력으로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 탁(이하 "형사공탁"이라 한다)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다.
 - ② 형사공탁의 공탁서에는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사건 번호,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하고, 공탁원인사실을 피해 발생시점과 채무의 성질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할 수 있다.
 - ③ 제2항에 따른 공탁서가 제출된 경우 공탁관은 해당 형사사건이계속 중인 법원과 피해자에게 공탁통지를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공탁관은 법원이나 검찰에 공탁통지에 필요한 피해자정보를 요청할수 있다.
 - ④ 법원이나 검찰은 제3항에 따른 공탁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피해 자의 동의를 얻어 공탁관에게 피해자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.

⑤ 형사공탁의 공탁서·공탁물 출급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면, 형 사공탁 절차, 공탁통지 절차 및 공탁물 출급 절차 등 그 밖에 필요 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5조의2(형사공탁의 특례) ① 형
	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
	따라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
	수 없는 등 스스로의 노력으로
	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지 못
	하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
	여 하는 변제공탁(이하 "형사
	공탁"이라 한다)은 해당 형사
	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
	의 공탁소에 할 수 있다.
	② 형사공탁의 공탁서에는 해
	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
	과 사건번호, 공소장에 기재된
	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
	을 기재하고, 공탁원인사실을
	피해 발생시점과 채무의 성질
	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할
	<u>수 있다.</u>
	③ 제2항에 따른 공탁서가 제
	출된 경우 공탁관은 해당 형사
	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피해
	자에게 공탁통지를 하여야 한
	다. 이 경우 공탁관은 법원이나

<u>검찰에 공탁통지에 필요한 피</u> 해자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.

- ④ 법원이나 검찰은 제3항에 따른 공탁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공탁 관에게 피해자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.
- ⑤ 형사공탁의 공탁서·공탁물 출급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면, 형사공탁 절차, 공탁통지 절차 및 공탁물 출급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.